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6월 17일, 송재봉의원 등 12인

나. 회 부 일 자: 2025년 6월 1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9.2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5.11.20.)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 폐기)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 상정, 소위심사보
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송재봉의원)

현행법은 수·위탁 관계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기술자료 유용 소송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반행위의 존재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소송 과정에서는 위반행위 존재여부 또는 손해액 입증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실효적인 증거 조사 절차가 미비하여 침해를 입증할 증거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침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해 전문가사실조사 제도, 증거보전 명령 및 증언녹취 제도를 도입하고,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분쟁 해결 수단을 마련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성소미)

송재봉의원안은 위탁기업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탁기업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미국·독일의 사례와 같이 법원 결정에 따라 전문가가 관련증거를

조사하도록 하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피해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수탁기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수·위탁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의 신속한 처리와 피해회복이라는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는 범위에서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전체에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동 제도는 증거 수집과 입증이 어려운 기술 관련 분쟁사건에서 피해자의 입증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이 논의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도의 적용 범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위원회(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원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대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대안반영폐기)